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62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신장식·차규근·김준형

김재원・조 국・강경숙

김선민 · 황운하 · 이해민

서왕진 · 정춘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,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,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,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2항, 제8조제2항, 제59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464호)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"국민권익위원회"라 한다)에"를 "국무총리 소속으로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"를 "법제처장이"로, "상임위원(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,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)이"를 "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"로 한다.

제5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 회로 본다.

제3조(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

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(위원장은 제외한다)은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은 이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) ①	제6조(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	②
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	
구에 대하여는 <u>「부패방지 및</u>	<u>국무총리 소속으</u>
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	<u> </u>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민권	·
익위원회(이하 "국민권익위원	
<u>회"라 한다)에</u> 두는 중앙행정	
심판위원회에서 심리·재결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	제8조(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
성) ① (생 략)	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	②
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	<u>법제처장이</u>
<u>장 중 1명이</u> 되며, 위원장이 없	
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	
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	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	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
상임위원(상임으로 재직한 기	<u>원이</u>
간이 긴 위원 순서로, 재직기간	
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	

<u>로 한다)이</u>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~ ⑨ (생 략)

제59조(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)

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심리·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 령 등(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·훈 령·예규·고시·조례·규칙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 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 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·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 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 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 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~ ⑨ (현행과 같음)
제59조(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)
①
<u><후단</u>
<u>삭제></u>

② (현행과 같음)